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 공고 제2026-2호

학부대학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 공무원 조교 채용 공고

학부대학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 공무원 조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국립부경대학교 학부대학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인원	직급	근무기간	담당 예정직무
(교무·학사·행정) 조교	1명	공무원 조교	2026. 7. 1.~ 2027. 8. 31.(14개월) (최대 4회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 가능)	-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 업무 - 자유전공학부 교무·학사·행정 업무 등

※ 임용일 및 소속 부서, 담당 업무 등은 내부 행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신 분)** 공무원 조교

○ **(보 수)** 「공무원 보수규정」 등 적용

○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제외

○ **(근무장소)**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지정장소

○ **(계약기간)** 2026.7.1.~2027.8.31.(최대 4회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 가능)

※ 임용일 및 소속 부서, 담당 업무 등은 내부 행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인정기준) 원서접수 마감일]

○ (기본 응시자격 및 취업대상 범위)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상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 범위 (각 단계별 전형에서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채용분야 우대사항)** 조교 경력자, 직무 관련 근무 경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조교 경력 및 직무 관련 근무경력은 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해당.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복수 기재 가능

* **직무 관련 근무경력**: 타기관·대학 등에서 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관련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

○ **(전형기준)**

구 분	평가기준	평가점수
자기소개서 평가 (표현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매우 우수	40점~33점
	우수	32점~25점
	보통	24점~17점
	부족	16점~9점
	매우 부족	8점~0점

구 분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대사항	조교 경력이 있는 경우 ※ (1년 이상~2년 미만) 2점, (2년 이상) 4점	2점~4점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 (1년 이상~2년 미만) 2점, (2년 이상~3년 미만) 3점, (3년 이상) 4점,	2점~4점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2점
계		50점

□ 면접전형(2차)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위원)** 3명으로 구성

○ **(면접기준)** 인성·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총 5가지 요소를 아래 평정기준에 따라 평가

연번	평 정 요 소	평 정 기 준	비 고
1	조교로서의 정신자세	상 / 중 / 하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장애인, 3순위 서류전형 점수 상위자 순으로 결정

5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발표 6개월 이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에 대한 신규 채용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채용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6. 5. 11.(월) ~ '26. 5. 21.(목)	학교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26. 5. 26.(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6. 5. 27(수) 예정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전형	'26. 6. 1.(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6. 6. 2.(화) 예정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합격자 서류제출	'26. 6. 8.(월) 18:00까지	
근무시작일	'26. 7. 1.(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 국립부경대학교 홈페이지

○ **(접수기간)** '26. 5. 11.(월) 09:00 ~ '26. 5. 21.(목) 18:00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를 공고문에 표시된 순서대로 합쳐서 1개 파일(PDF) 제출

※ <파일명: 조교_성명.>으로 제출(예. 파일명: 조교_김○○.pdf)

- 제출처: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 조교 채용 담당자, ye0520@pknu.ac.kr

○ **(제출서류)**

① (공통) 응시원서 1부 [서식1]

② (공통) 이력서 1부 [서식2]

③ (공통) 자기소개서 1부 [서식3]

④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⑤ (공통)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5]

⑥ (공통)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서식6]

⑦ (공통)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7]

⑧ (남성에 한함)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초본 상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할 것 (별표, 모자이크처리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 졸업/학위 증명서 1부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학력요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할 것

⑩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만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만 인정함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

※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경력증명서와 함께 업무분장표, 조직도 등 근무분야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⑪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⑫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간접적인 서류는 불인정하며, 보훈지청, 동주민센터, 인터넷 민원24 등을 통해서 발급받은 가점비율이 기재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만 인정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응시번호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본 문자메시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 주민등록초본, 경력(재직)증명서에 전체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최종합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이 발생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변경공고 할 수 있음

○ 본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3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 공고할 예정임

○ 기타 내용은 국립부경대학교 자유전공길라잡이센터 조교 채용 담당자 (☏ 051-629-7540 / ye0520@pknu.ac.kr)에게 문의

붙임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